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976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976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201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A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A)

【피고, 피상고인】 원C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B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20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던 주채무자인 민D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이 사건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키로 하고서도 합계

33,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대신 지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민DA이 원고에게 반환기로 약정한 돈 중 민DA이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인 원금 26,62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1998. 1. 13. 공포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민DA이 지급한 돈 중 위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민DA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